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원천징수 | 근로소득관리 | 연말정산관리 |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본 메뉴는 일년 동안(원천작업년도)의 급여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항목 차감 후 계산된 과세표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결국, 중도퇴사자 또는 12월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 작업을 위한 필수 메뉴입니다.)

입력방법

1. [환경등록]의 10.상용직급여입력방식이 1.월별인 경우 [급여자료입력]의 데이터를 반영하고, 2.일괄인 경우 [급여자료일괄입력]의 데이터를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및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 추가자료를 입력합니다.
2. 계속, 중도, 총괄 탭으로 구성되며, <F3 전체사원>으로 계속 탭에서는 계속근무자(퇴사일자가 없는 사원), 중도 탭에서는 현재 작업년도에 퇴사한 사원, 총괄 탭에서는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 모두 반영 가능합니다. <F2 코드> 및 사번 직접 입력으로도 반영 가능합니다.
3. 각 사원별로 소득명세, 부양가족소득공제입력, 연금/저축 등, 연말정산입력, 연말정산내역조회 탭으로 나뉘어 입력합니다.
4. 소득명세 탭
소득명세 탭은 주(현), 납세조합, 종(전)의 급여 등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을 입력합니다.

(2) 불입금액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2010)

17777 (주)뉴원솔루션 법인 8기 2016-01-01~2016-12-31 부가세 2016, 원한 2016

F3 전체사원 F4 세로확대 F5 가로확대 F6 자료경선 F7 재경산 F8 부양가족등록불러오기 F9 직입완료 F10 세액단수처리

계속 종료 출감

연리한연말정산 액출 참고:특별소득(세액)공제 적용분 확대

사번	사원명	완료	소득명세	부양가족소득공제	연금저축	환세, 주택임차차입	연말정산입력	확대
101	김뉴원	X						
1 연금계좌 세액공제 - 퇴직연금계좌(연말정산입력 탭의 59. 과학기술인공제, 60. 근로자퇴직연금) 크게보기								
퇴직연금 구분	코드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증권번호)	납입금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금액		
1. 퇴직연금			123456789	1,000,000	1,000,000			
2.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1,000,000	1,000,000			
과학기술인공제회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연말정산입력 탭의 38. 개인연금저축, 61. 연금저축) 크게보기								
연금저축구분	코드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증권번호)	납입금액	공제대상금액	소득/세액공제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3 주택마련저축 공제(연말정산입력 탭의 40.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크게보기								
저축구분	코드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연말정산입력 탭의 47.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크게보기								
코드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총급여액				5,000,000				
비과세소득				300,000				
지급명세서작성대상 비과세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원)				325,150				
기납부세액(종전)								
납부세액				<325,150				
연말(계속근무자)								
종도(종회사자)								

퇴직연금: 1. 퇴직연금, 2. 과학기술인공제회

[세액] 105-07-51159 [계]

7. 연말정산입력 탭

- (1) 소득명세, 부양가족소득공제입력, 연금/저축 등 탭의 데이터를 반영하고, 37.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등 첨부서류 필요 없이 직접 입력 가능한 항목의 경우는 입력합니다
- (2) <F8 불러오기> 또는 <Shift+F12 근로소득공제신고서불러오기>로 입력된 데이터 자동반영이 가능합니다. 불러오기한 데이터는 본 메뉴에서 추가 확인하도록 합니다.
- (3) 38.기부금은 부양가족소득공제입력 탭의 금액과 [기부금명세서]에서 반영된 금액이 전년도 이월금액으로 인해 지출금액에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4) 감면소득이 있는 사원은 세액감면 중 해당되는 감면항목을 필수 입력합니다.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2016)

177771 (주)뉴원출판사 법인 01 2016-01-01~2016-12-31 무가세 2016 월간 2016

F3 전체사원 F4 세로확대 F5 가로확대 F6 자료갱신 F7 재정산 F8 부양가족등록불러오기 F9 작업완료 F10 세액단수처리

계속 중도 총괄

연말정산입력 액셀 참고:특별소득(세액)공제 적용분

사번 사원명 완결

101 김유진

소속명세 부양가족소득공제 연금저축 등 월세, 주택임차차입 연말정산입력 확대

정산(지급)년월 2017 년 2 월 귀속기간 2016 년 1 월 1 일 - 2016 년 12 월 31 일 명수일자 2017 년 2 월 28 일

구분	지출액	공제금액	구분	지출액	공제대
21. 총급여		5,000,000	49. 종합소득 과세표준		
22. 근로소득공제		3,500,000	50. 산출세액		
23. 근로소득공액		1,500,000	51. 「소득세법」		
기 24. 분임		1,500,000	52. 「조세특례제한법」		
분 25. 배우자			(53제외)		
세 26. 부양가족	(명)		53. 「조세특례제한법」		
후 27. 근로부대	(명)		제30조		
가 28. 중대인	(명)		54. 조세조약		
공 29. 부녀자			55. 세액감면 계		
제 30. 한부모가족			56. 근로소득 세액공제		
면 31. 국민연금보험료		100,450	57. 「소득세법」		
공 32. 공무원연금			자녀 (0세이하)	(명)	
합 33. 군인연금			세액 공제	(명)	
공 34. 사립학교교직원			연말정산 입양	(명)	
공 35. 병역특례연금			58. 과학기술공제		
공 36. 발령무체국연금			59. 근로자복지연금		1,000,000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동여론특별세	계
73. 결정세액				
기납부 74. 총(전)근무지				
세액 75. 주(현)근무지	325,150	32,510		357,660
76. 납부특례세액				
77. 차감할수세액	-325,150	-32,510		-357,660

총급여액 5,000,000
비과세소득액 300,000
지급원세액상당비과세
결정세액
기납부세액(현) 325,150
기납부세액(종전)
납부세액 -325,150
연말(계속근무자)
중도(종료사자)

[wako] 105-97-51159

8. 연말정산입력 탭의 데이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자동 반영합니다.

F1

버튼설명

<F3 전체사원>

계속 탭에서는 계속근무자, 중도 탭에서는 중도퇴사자, 총괄 탭에서는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 전체를 불러옵니다.

<F4 세로확대>

화면이 최대한 화면이 보이도록 확대합니다.

<SF5 가로확대>

화면이 최대한 화면이 보이도록 확대합니다.

<F6 자료갱신>

[급여자료입력] 또는 [사원등록]을 변경한 경우 적용하여 자료를 갱신합니다.

<F7 재정산>

다른 데이터 변경 없이 연말정산입력 탭의 금액으로만 재계산을 합니다.

<F8 불러오기>▼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의 데이터를 부양가족소득공제입력 탭의 소득공제 부분과 연말정산입력 탭의 해당 공제항목의 지출액으로 자동반영합니다.

다. 버튼 클릭 후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F8 불러오기>▼ <Shift+F1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부양가족소득공제입력 탭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지출액을 연말정산입력 탭의 35.의료비, 36.교육비, 46.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출액으로 반영합니다.

<F8 불러오기>▼ <Shift+F12 근로소득공제신고서불러오기>

- (1) [근로소득공제신고서]의 지출액을 반영하며 공제금액을 재계산합니다.
- (2) 불러오기 적용할 경우 기 입력된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F8 불러오기>▼ <Shift+F3 국세청PDF불러오기>

- (1)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PDF 데이터를 업로드 합니다.
- (2) 버튼 클릭 후 <도움말>을 숙지한 후 작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F8 불러오기>▼ <Shift+F4 부양가족추가공제자동반영>

현재라인 또는 선택 사원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추가공제를 자동표시 합니다. 작업 상태가 미완료인 사원만 적용됩니다.

<Ctrl+F1 작업완료> / <Ctrl+F2 완료취소>

현재라인 또는 선택된 사원의 연말정산입력 데이터의 보존을 위해 완료한 데이터인 경우 수정 및 삭제를 불가하며, 재입력 및 추가 반영 사항이 있는 경우는 완료취소 후 다시 작업 합니다.

<Ctrl+F3 세액단수처리>

세액을 원미만 또는 십원미만 중 선택하여 절사합니다.

<Ctrl+F4 인정상여>

법인조정의 소득자료 명세서의 소득부분이 1.인정상여이고, 귀속연도가 일치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버튼 클릭 후 설명을 참고합니다.

인정상여 적용

사번

사원명

인정상여금액(소득자료명세)

급여자료입력(인정상여)

1	김뉴원		
101	이지나		
103	이사원		
104	이대리		

※법인조정의 소득자료 명세서의 소득구분 1, 인정상여이고 귀속연도와 일치 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불러오기: 해당 회사코드 법인조정의 소득자료 명세서 금액을 새로 불러옵니다.

적 용 : 인정상여금액(소득자료명세)금액을 반영합니다.

차액적용 : 인정상여금액(소득자료명세) - 급여자료 입력(인정상여)가 양수인 경우만 반영합니다.

적용해제 : 선택한 사원의 인정상여 금액을 삭제 합니다.

※완료 표시된 사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러오기

적용

차액 적용

적용해제

닫기(Esc)

<참고:특별소득(세액)공제 적용분>

특별소득(세액)공제 와 표준세액공제를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특별(소득)세액공제반영			
	구분	특별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특별 소득 공제	(33)보험료	590,000	
	(34)주택자금		
	(35)기부금(이월분)		
	(36)계	590,000	
	(37)차감소득금액	40,660,000	
	(50)종합소득과세표준	40,558,000	41,148,000
	(51)산출세액	5,003,700	5,082,200
특별 세액 공제	(62)보장성보험료		
	(63)의료비		
	(64)교육비	450,000	
	(65)기부금		
	(66)계	450,000	
	(67)표준세액공제		130,000
	(71)할세세액공제		
	(73)결정세액	3,173,700	3,582,200

※특별소득(세액)공제 + 할세세액공제 금액과 표준세액공제 19만원과 비교하여 균등하게 유리한쪽으로 반영

①, ② 중 균등하게 유리한 쪽을 적용

①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제외) 할세액을 적용 후 결정세액

② 표준세액공제(19만원)를 적용 후 결정세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

확인(Esc)